

서울시 택시운송원가 분석(안)

2013. 8.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1. 택시 운송원가 검증

1.1 택시 운송원가 검증개요

- 본 연구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사)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12년 2월 작성하여 건의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조합안”)의 적정성을 검토·분석하였으며, 2012년 기준 경영실태조사표(이하“경영실태조사표”) 등을 근거로 서울시안을 제시함
 - 조합안의 관련법규 적용 적합성 여부 검토
 - 조합안의 택시 운송원가 산정 시 원가구성 항목의 적합성 검토
 - 조합안의 택시 운송원가 산정 시 원가계산 방식에 대한 논리성 검토
 - 조합안의 적정운임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
 - 서울시 원가 분석안 제시

1.2 운송원가 분석의 차이점

- 조합안과 서울시안의 운송원가 분석대상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운송원가 분석대상 차이

구분	조합안 (중앙경제연구원)	서울시안 (홍익대학교)
기준년도	2010년	2012년
분석대상	등록대수 : 7,479대 운행대수 : 5,564대 가 동 률 : 74.4% 운전자수 : 14,413명	등록대수 : 18,259대 운행대수 : 13,186대 가 동 률 : 72.0% 운전자수 : 33,665명
운영현황	운행거리 : 416.17km 영업거리 : 251.08km 영 업 률 : 60.3%	운행거리 : 439.92km 영업거리 : 281.11km 영 업 률 : 63.9%
경영실태분석	2010년 재무제표 및 실태조사자료 (82개 업체)	2011년 재무제표 2012년 기준 경영실태조사표 자료 (211개 업체*)
운영실태분석	2010년 타코미터자료(12개 업체)	2011~2012년 타코미터자료(211개 업체*) 2013년 DTG자료(255개 업체)

(*) 전체 255개 업체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된 업체는 제외함

1.3 조합안 운송원가의 문제점

1) 비공식소득의 평균임금 포함

- 조합안은 임금협정서 상의 전액관리제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총운송수입금 중 납입기준금외의 비공식소득을 성과급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운송원가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액임금제 기반으로 하여 비공식소득을 운수종사자 인건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에서는 제외시켜 운송원가를 분석하였음.
- 조합안은 법정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임금총액+퇴직급여+성과급(비공식수입))에 대해 4대 보험(장기요양보험 누락)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하지만 퇴직급여와 비공식수입의 경우 5대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정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킴에 따라 운송원가를 과대 계상함.

2) 타이어비 및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 타이어비 및 감가상각비의 경우 총지급액기준이 아닌 해당 표준금액으로 산정함. 이 경우 표준금액 자체가 해당 운송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안에서는 가동률로 나누어줌에 따라 운송원가가 과대 계상됨.

3) 자료의 통일성 부족

- 운전직종사자의 임금은 2011년 임금협정서를 적용, 정비직 인건비의 경우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2009년 업계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함)를 적용, 관리직 인건비의 경우 실태자료를 적용, LPG단가는 2012년 2월 적용, 타이어단가는 2010년 12월 단가적용, 감가상각비는 2010년 연구용역보고서를 적용함에 따라 자료의 통일성이 없고 기준이 다양함.

4) 부가가치세 비합리적 계상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인건비에 반영하였다면 원가산정시 부가가치세는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부가가치세를 “(총원가+적정이

운)x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실제 부담세율은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운송수입(공급대가)의 약 6% 정도이므로 과대 계상되어 있음.

1.4 운송원가 항목별 분석방법 차이 세부내역

○ 운송원가 분석시 항목별 적용방법의 세부내역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운송원가 항목별 세부내역차이 요약

구분	조합안 (중앙경제연구원)	서울시안 (홍익대학교)
연료비	- 평균운행거리 : 416.17km/대·일 - 연비 : 5.9km/ℓ - 단가 : 1,031.16원/ℓ('12.2월기준)	- 평균운행거리 : 439.92km/대·일 - 연비 : 6.19km/ℓ - 단가 : 1,092.28원/ℓ('12년 실제구입단가)
운전직 인건비	- 총인건비 : 1,657,227원/월 - 고정급 : 1,144,868원/월('11년 임금협정서) - 성과급 : 512,359원/일(기준 초과금의 60%) - 퇴직급여 : 인건비 전체의 1/12(성과급포함)	- 총인건비 : 1,872,870원/월 - 고정급 : 1,031,018원/월('12년 임금대장평균) - 부가세경감분 : 147,074원/월 - 비공식수입 : 694,778원/일(서울연구원 자료) - 퇴직급여 : 고정급여의 1/12(비공식수입과 부가세경감분 제외)
대당 소요인원	- 소요인원 : 2.59명/대('09년 실태조사)	- 소요인원 : 2.4명/대(2인1차, 국토교통부 기준)
정비직 인건비	- 평균급여 : 1,883,011원/월('09년 실태조사) - 소요인원 : 0.073인/대('09년 실태조사)	- 평균급여 : 2,169,782원/월('12년 경영실태조사) - 소요인원 : 0.06명/대('12년 경영실태조사)
관리직 인건비	- 평균급여 : 2,685,663원/월('09년 실태조사) - 소요인원 : 0.2031인/대('09년 실태조사)	- 임원 · 평균급여 : 4,419,542원/월(버스회사 자료) · 소요인원 : 업체당 2명(실적치 2.26명) - 일반직 및 기타직('12년 경영실태조사) · 평균급여 : 일반직(2,419,173원) 기타직(1,390,835원) · 소요인원: 일반직(0.112명), 기타직(0.003명)
법정복리 후생비	- 총인건비의 10.365%(비공식수입 및 퇴직급여 포함)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 보험 등 4대 보험의 법정비율	- 고정급여의 10.54%(비공식수입 및 퇴직급여 제외)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5대보험 평균비율)
기타복리 후생비	- '10년 재무제표 기준	- '12년 경영실태조사 기준
차량 유지비	- 타이어단가 : '10. 12월 평균타이어단가 사용 - 타이어개수 : 연간 소모량/가동률('09년 실태조사)	- 타이어단가 : 실적평균치('12년 경영실태조사) - 타이어개수 : 적정교체주기(60,000km) 반영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사고보상비	- '09년 실태조사	- 차량보험료 : 가동률 반영('12년 경영실태조사) - 제세공과금 : 2012년 경영실태조사 - 사고보상비 : 제외
기타경비	- '09년 실태조사	- '12년 경영실태조사
적정이윤	- 이윤 : (운송원가+ 일반관리비-유류비-차량유지비) x 10%	- 이윤 : 유·무형자산 x 투자보수율(4.15%) * 유·무형자산은 법인택시거래가격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총원가+적정이윤)x10%	- 부가가치세 : 총운송수입의 1/110 적용(운송수입에서 차감) *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운전직종사자의 총임금에 포함

1) 연료비(유류비)

- 조합안의 연료비는 1일 대당 평균운행거리(416.17km)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LPG 소모량(연비는 5.9km/리터당)을 파악하고, 동 소모량에 2012년 2월의 LPG판매단가(1,031.16원)를 적용하여 산정함. 잡유비는 재무제표 자료에 의한 비용을 산출하여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산정함.
- 본 연구의 연료비는 1일 대당 평균운행거리(439.92km)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LPG 소모량(연비는 6.19km/리터당)을 파악하고, 동 소모량에 2012년 실제평균구입단가(1,092.28원)를 적용하여 산정함. 잡유비는 경영실태조사표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산정함.

2) 운전직종사자의 인건비

- 조합안의 운전직 인건비는 2011년도 임금협정서상 1년 이상 2년 미만자의 고정급(1,144,868원/월)과 성과급(512,359원/월), 퇴직급여로 구성하였음. 성과급은 1일 운송수입금(283,687원)을 기준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하여 전액입금 처리하여 기준금액(1인당 10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함. 퇴직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한 인건비 전체의 1/12를 적용함.
- 본 연구의 운전직 인건비는 성과급을 포함하여 운전직종사자의 실질소득 1,872,870원을 적용하였으며, 타코미터 및 DTG자료를 통한 실제 비공식수입(1인당 694,778원) 및 부가세경감분(147,074원)을 포함하여 적용함. 퇴직급여는 실질소득 중 비공식수입과 부가세경감분을 제외한 고정급(1,031,018원/월)여에만 적용함.

3) 대당 소요인원

- 조합안의 대당 소요인원은 실태조사에 의한 운전직종사자 인원(14,143명)을 운행대수(5,564대)로 나누어 대당 소요인원(2.59명)을 산정함.

- 본 연구의 대당소요인원은 2인1차를 기준으로 대당 적정소요인원 2.4명을 적용함(국토교통부 기준 준용).

4) 정비직인원의 인건비

- 조합안의 정비직인원의 인건비는 2009년 업계에서 조사한 1인당 평균급여(1,883,011원)를 적용하였고, 대당 소요인원은 2009년 업계에서 조사한 정비직인원(406명)과 등록대수(7,479대)를 고려하여 대당 0.073명을 적용함.(퇴직급여는 급여총액의 1/12를 적용)
- 본 연구의 정비직인원의 인건비는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의 급여총액을 정비직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평균급여(2,169,782원)를 적용하였고, 대당소요인원은 정비직인원(724명)을 운행대수(13,186대)로 나누어 대당 0.06명을 적용함(퇴직급여는 급여총액의 1/12를 적용).

5) 관리직인원의 인건비

- 조합안의 관리직 인건비는 2009년 업계에서 조사한 급여 총지급액을 지급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월평균급여(2,685,663원)를 적용하였으며, 대당소요인원은 조사된 관리직인원을 운행대수로 나누어 대당 0.2031명을 산출함(퇴직급여는 급여총액의 1/12를 적용).
- 본 연구의 임원 인건비는 버스회사의 임원급여(년 53,034,500원)을 한도로 월평균급여(4,419,542원)를 적용하였으며, 관리직 및 기타직의 경우 급여총액을 인원수(일반직 : 1,469명, 기타직 : 46명)로 나누어 1인당 월평균급여(일반직 : 2,419,173원, 기타직 : 1,390,835원)를 적용함. 대당소요인원은 임원의 경우 업체당 2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관리직 및 기타직의 경우 인원(일반직 : 1,469명, 기타직 : 46명)을 운행대수(13,186대)로 나누어 대당 적정소요인원(일반직 : 0.112명, 기타직 : 0.003명)을 산정함.(퇴직급여는 급여총액의 1/12를 적용)

6) 복리후생비

- 조합안의 법정복리후생비는 인건비(비공식수입 및 퇴직급여포함)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법정비율(10.365%)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기타복리후생비는 대상 업체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타복리후생비를 운행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 본 연구의 법정복리후생비는 인건비(비공식수입 및 퇴직급여제외)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5대보험의 평균비율(10.54%)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기타복리후생비는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의 기타복리후생비 총액을 운행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7) 감가상각비

- 조합안의 차량가격은 2009년 업계에서 조사한 해당 취득금액을 적용하였고, 내용연수는 일반택시 차령년수인 4년을 적용함(잔존가액은 폐차비 10,000원 적용).
- 본 연구의 차량가격은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의 실제취득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내용연수는 조사된 차량의 실제 이용년수 평균치인 5년을 적용함(잔존가치는 "0"이라고 가정).

8) 차량유지비

- 조합안의 타이어비는 2010년 12월 타이어단가를 사용하여 연간 소모량을 파악 후 가동률로 나누어 타이어비를 산정하였고, 정비비는 실적치를 기준으로 운행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 본 연구의 타이어비는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의 총타이어비를 총타이어구입수량으로 나눈 타이어 단가를 타이어교체주기(60,000km)로 나누어 km당 타이어비를 산정 후 1일 평균주행거리(439.92km)를 고려하여 1일 타이어비를 산정하였고, 정비비는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의 정비비를 운행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9)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사고보상비

- 조합안의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사고보상비는 2009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본 연구의 차량보험료는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의 차량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가동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보험료를 제외함. 제세공과금은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사고보상비는 운송원가와 합리적으로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운송원가 산정시 제외함.

10) 기타경비

- 조합안의 기타경비는 실제 발생한 기타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본 연구의 경비는 2012년 경영실태조사표의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11) 적정이윤

- 조합안의 적정이윤은 “(운송원가+일반관리비-유류비-차량유지비) x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 본 연구의 적정이윤은 서울시 택시업체의 대당거래가격을 유·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투자보수율(4.15%)을 고려하여 산정함.

12) 부가가치세

- 조합안의 부가가치세는 “(총원가+적정이윤)x10%”를 적용하여 산정함.
- 본 연구의 부가가치세는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총운송수입의 1/110을 적용하여 운송수입에서 차감함.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해서는 운전직종사자의 총임금에 포함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였음.

1.5 운송원가의 비교

- 조합안의 2012년 운송원가 세부내역과 본 연구의 2012년 실적원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 운송원가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조합안		서울시안		증감(*)
				2012년		2012년 실적원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운행비	운행거리	운전직 인건비	급여	153,706	41.8%	147,777	49.8%	(5,929)
			퇴직급여	-	-	6,779	2.3%	6,779
			법정복리후생비	15,635	4.2%	8,574	2.9%	(7,061)
			기타복리후생비	1,766	0.5%	2,734	0.9%	968
	연료비	56,321	15.3%	61,865	20.8%	5,544		
	타이어비	2,794	0.8%	1,762	0.6%	(1,032)		
차량관리비	운행차량	정비직 인건비	급여	4,863	1.3%	3,929	1.3%	(934)
			퇴직급여	405	0.1%	327	0.1%	(78)
			법정복리후생비	504	0.1%	414	0.1%	(90)
			기타복리후생비	-	-	123	0.0%	123
	정비 및 차량관리비	8,852	2.4%	8,033	2.7%	(819)		
	감가상각비	9,828	2.7%	7,660	2.6%	(2,168)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19,304	5.2%	13,190	4.4%	(6,114)		
	사고보상비	709	0.2%	-	-	(709)		
차고지비	-	-	4,240	1.4%	4,240			
일반관리비	업체	임직원 인건비	급여	19,583	5.3%	13,711	4.6%	(5,872)
			퇴직급여	-	-	1,143	0.4%	1,143
			법정복리후생비	1,859	0.5%	1,445	0.5%	(414)
			기타복리후생비	640	0.2%	437	0.1%	(203)
	경비	13,509	3.7%	5,869	2.0%	(7,640)		
총원가		310,278	84.3%	290,014	97.7%	(20,264)		
부가가치세		33,451	9.1%	-	0.0%	(33,451)		
적정이윤		24,231	6.6%	6,822	2.3%	(17,409)		
합계		367,960	100.0%	296,836	100.0%	(7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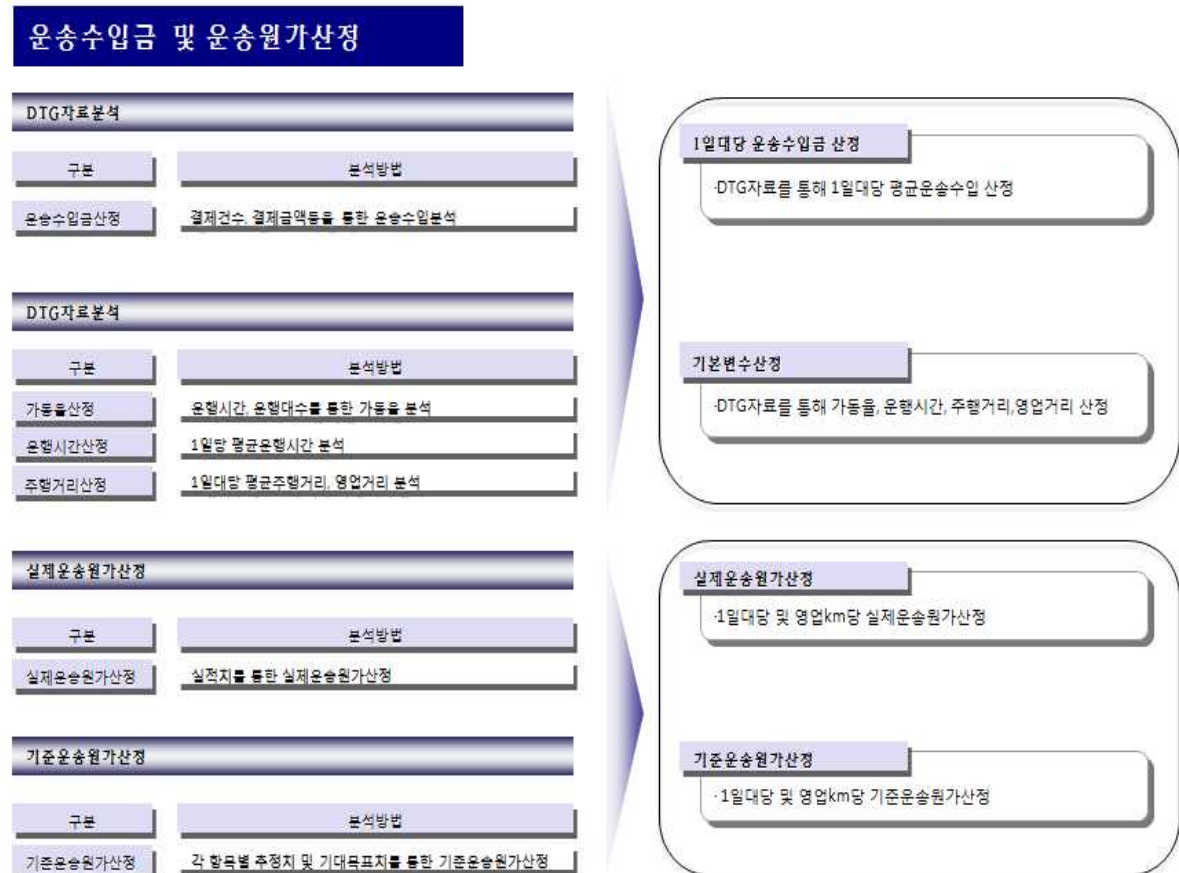
(*) 증감은 조합안의 2012년도 원가와 서울시안 2012년 실적원가의 차이임

- 조합안 운송원가와 본 연구의 운송원가를 비교한 결과 71,124원의 차이가 발생함.
- 조합안 운송원가의 경우 택시회사의 모든 비용을 운송원가에 포함하여 요금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운송원가 중 과다지급 항목과 경영개선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운송원가 항목에서 사전 배제함
- 이는 추후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원가산정 단계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택시업체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경영개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야 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및 제세공과금, 사고보상비, 임원급여, 수수료 등 경비, 적정이윤 등으로써 1일 대당 약 49,383원 상당의 비용을 운송원가에서 제외함.

2.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방법

2.1 분석방법

- 택시업계에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제출한 “2012년 기준 경영 실태조사표”를 기초로 자료 분석을 통해 각종 변수 및 실적원가를 산정함.
- 실적원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율(2.2%),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 임단협 결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원가 발생 항목 등을 반영하여 기준 원가(2013년 기준)를 산정함.
-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의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3. 운송원가 구성항목의 분류

3.1 택시운송원가의 구분

- 택시운송원가의 조건 : 승객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원가에 포함됨.
 - 객관성 및 합리성 : 운송원가에 포함해야 할 비용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함
 - 지속성 및 공통성 : 운송원가에 포함해야 할 비용은 계속적이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함.

- 택시운송원가 산정시 제외된 항목 및 원인
 - 객관성 결여 : 운송원가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서 기타사고보상비, 접대비, 벌과금, 잡비는 제외함
 - 합리성 결여 : 부품비 및 수리비 중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함.
 - 공통성 결여 : 간접비 중 기타 항목은 업체마다 0원에서 10억원 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운송원가 분석시 제외함.
 - 이중 계산 : 이자비용의 경우 운송원가 산정시 이윤으로 보상되는 부분이므로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함.

3.2 택시운송원가의 분류

- 택시운송원가의 분류체계
 - 택시운송원가는 원가 발생요인을 고려하여 4개의 원가항목과 11개의 원가요소로 분류함. 이는 원가발생요인과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합리적인 운송원가의 산정과 원가관리를 가능하게 함.

○ 택시운송원가의 항목별 원가요인

- 운행비 : 차량운행에 따라 비례 발생하는 원가로 운전직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로 구성하며 운송원가 산정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함
- 차량관리비 : 차량의 보유와 관련한 유지관리비 및 보유원가로서 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원가가 결정되므로 차량등록 및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함
- 일반관리비 : 상기 이외의 비용으로 임직원 및 기타직의 인건비, 경비로 구성됨. 임원의 인건비는 버스회사의 임원 인건비를 한도를 설정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함.
- 이윤 : 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유·무형(투자)자산에 대한 보수임.

<표 4> 운송원가의 분류체계

원가항목	원가형태	원가변인	원가요소
운행비	- 차량운행에 비례하는 변동비	- 운행거리	- 운전직인건비 - 연료비 - 타이어비
차량관리비	- 차량의 보유 및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일부 변동비와 준고정비 혼재	- 차량 등록대수 및 운행거리	- 정비직 인건비 - 정비비 및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 감가상각비 - 차고지비
일반관리비	- 등록 차량 대수에 따른 준고정비 성격의 비용	- 고정비 + 등록차량 변동비	- 임직원 인건비 - 경비 등
이윤	-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	- 유·무형 자산	- 적정이윤

○ 택시운송원가의 세부내역

운송원가 산정시 원가발생 요인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 택시운송원가의 세부항목

구분	요인	항목		세부항목
운 행 비	운 행 거 리	운전직 인건비	급여	운전직종사자의 급여, 비공식수입, 부가세경감분
			퇴직급여	운전직종사자의 퇴직급여
			법정복리 후생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기타복리후생비	경조사비, 휴가비, 무사고격려금, 피복비, 기타
		연료비	주유금액 (유가보조금 차감후 금액)	
		타이어비	타이어비	
차 량 관 리 비	보 유 차 량	정비직 인건비	급여	정비직인원의 급여
			퇴직급여	정비직인원의 퇴직급여
			법정복리 후생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기타복리후생비	식대, 피복비, 기타
		정비및차 량관리비	부품비및외주비	엔진오일, 기어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기타잡유비, 소모품비, 부속품비, 기타부품비, 차량유지비, 검사점검비, 수리비, 견인비, 세차비, 기타수리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기타공과금	
차고지비	지급임차료			
일 반 관 리 비	업 체	임직원 인건비	급여	임직원 및 기타직급여
			퇴직급여	임직원 및 기타직의 퇴직급여
			법정복리 후생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기타복리후생비	식대, 피복비, 기타
		경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잡비, 기타관리비	
이윤	업체	적정이윤	자산기준 보수율의 적용 방식	

4. 실적원가 산정

4.1 기본변수의 설정

- 항목별 원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동률, 영업거리, 영업율 등 기본 변수는 DTG자료 및 타코미터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 음.

<표 6> 기본변수(2인1차기준)

(단위:%,km)

가동률	1일 대당 평균운행거리		
	총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율
72%	439.92km	281.11km	63.90%

- 실적운송원가 산정시 가동률의 산정방법은 『택시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 - 국토해양부(2009.06)』에서 발표한 방법을 적용하여 3년(2011년부터 2013년 까지)평균치를 적용함.

$$\ast \text{가동률}(72\%) = \{71.8\%(2011\text{년}) + 72.6\%(2012\text{년}) + 71.6\%(2013\text{년})\} / 3$$

- 총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는 DTG자료 중 1일 운행거리 350km 이상, 운행시 간 22시간 이상 및 영업률 50%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산정함.

4.2 원가항목별 실적원가 산정기준

1) 기본가정

- 2인1차 기준

실적원가 산정시 운송원가는 2인1차를 기준으로 산정됨.

- 비공식수입

실적원가 산정시 적용된 비공식수입액은 694,778원/월을 적용함.

○ 인건비

운전직종사자의 인건비는 2인1차 기준의 실적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임원의 인건비는 버스회사 임원의 급여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써, 급여의 1/12를 적용함.

○ 적정이윤

운송원가에서의 이윤은 사업을 위한 투자에 대한 보수 또는 투자자본에 대한 보수 등으로 보아서 자산기준으로 적정이윤을 설정함.

○ 부가가치세

경영실태조사표의 각 항목별 원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운송원가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또한 운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세특례법”제106조7에 의해 90/100을 경감하고 있음.

○ 예비율

예비차량은 택시차량의 정기점검,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차량으로, 차량 보유로 발생하는 차량관리비에 적정예비율(4%)을 적용하여 일정원가를 보전해줌(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에 적용).

○ 가동률 반영방법

감가상각비와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의 경우 운행을 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비용은 운송원가 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가동률을 반영하지 않고 실적원가를 산정함.(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의 경우 운행차량에 대한 실적치에 가동률을 곱하여 실제운행차량에 대해서만 반영함)

2) 실적원가 산정기준

- 분석기간 동안의 실적자료 및 정책지표를 토대로 1일 대당 원가를 산정 후

영업거리로 나누어 항목별 영업거리 km당 운송원가를 산정함

○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7> 항목별 실적원가 산정기준

구분	요인	항목		산정기준	
운 행 비	운 행 거 리	운전직 인건비	급여	운전직종사자의 월 임금(1인기준) x 대당적정인원(2.4명) / 30.4일/1일평균영업거리	
			퇴직급여	운전직종사자의 1일 대당임금의 1/12 / 1일평균영업거리	
			법정복리후생비	운전직종사자의 1일 대당적정임금 x 10.54% / 1일평균영업거리	
			기타복리후생비	운전직 종사자의 연간 기타복리후생비/운행대수/365일 / 1일평균영업거리	
		연료비	km당 유류비(유류비 실적단가/표준 연비) x 1일운행거리 / 1일평균영업거리		
		타이어비	타이어실제단가 / 적정교체주기 x 1일운행거리 / 1일평균영업거리		
차 량 관 리 비	보 유 차 량	정비직 인건비	급여	(정비직인원의 월 평균급여 x 대당적정인원 / 30.4일 / 1일평균영업거리	
			퇴직급여	정비직인원의 1일 대당 평균급여의 1/12 / 1일평균영업거리	
			법정복리후생비	정비직인원의 1일 대당 적정급여 x 10.54% / 1일평균영업거리	
			기타복리후생비	정비직 근로자의 연간기타복리후생비/운행대수/365일 / 1일평균영업거리	
		정비및차 량관리비	부품비및외주비	연간 정비및차량관리비/운행대수/365일 / 1일평균영업거리	
		감가상각비	차량 1대당 취득가액 / 내용연수(5년) / 365일 / 1일평균영업거리/ (1-예비율)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연간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운행대수/365일 / 1일평균영업거리)/(1-예비율)x가동률		
		차고지비	운행대당 적정차고지비 설정		
일 반 관 리 비	업 체	임직원 인건비	급여	(임직원등의 월 적정급여 x 대당적정인원) / 30.4일 / 1일평균영업거리	
			퇴직급여	임직원등의 1일 대당 적정급여의 1/12 / 1일평균영업거리	
			법정복리후생비	임직원등의 1일 대당 적정급여 x 10.54% / 1일평균 영업거리	
			기타복리후생비	임직원의 연간 기타복리후생비/운행대수/365일 / 1일평균영업거리	
		경비	연간경비/운행대수/365일/1일평균영업거리		
이윤	업체	적정이윤	유·무형자산*투자보수율		

4.3 원가항목별 실적원가 산정

1) 운행비

- 운행비는 운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운전직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로 구성됨.

(1) 운전직종사자의 인건비

운전직종사자의 인건비는 급여, 비공식수입, 부가세경감분으로 구성됨. 급여는 고정급 기준이며, 비공식수입은 기준입금액 납입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평균이며, 부가세경감분은 운수종사자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8> 영업거리 km당 운전직종사자의 인건비 산정

(단위:원,명,km)

구 분	1인당 월 인건비	대당 적정인원	대당 인건비	대당1일 인건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급여	1,031,018	2.4	2,474,443	81,352	281.11	289.40
비공식수입	694,778	2.4	1,667,467	54,821	281.11	195.02
부가세경감분	147,074	2.4	352,978	11,605	281.11	41.28
합계	1,872,870		4,494,888	147,777		525.69

○ 대당 적정인원

대당 적정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변수와 관계없이 운전직종사자 근로조건에 따라 대당 적정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산정함.

<표 9> 대당 적정소요인원 산정

(단위:명,일)

구분	인원	비고
① 대당소요인원(월)	60명	30일*2명
② 1인평균근무일수	25일	월평균정상근무일수 - 운전직종사자평균휴일
③ 대당적정소요인원	2.4명	③=①/②

(2) 운전직종사자의 퇴직급여

운전직종사자의 퇴직급여는 1일 대당 적정인건비의 1/12을 적용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10> 영업거리 km당 운전직종사자의 퇴직급여 산정

(단위:원,km)

구분	대당1일 인건비	대당1일 퇴직급여(*)	1일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급여	81,352	6,779	281.11	24.12

(*) 소득을 노출하지 않은 비공식수입과 부가세경감분은 퇴직급여에 반영하지 아니함.

(3) 운전직종사자의 법정복리후생비

운전직종사자의 법정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5대 보험으로 구성되며, 운전직종사자 1일 대당 적정인건비(81,352원, 비공식수입과 부가세경감분 제외)의 일정비율(10.54%)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11> 영업거리km당 운전직종사자의 법정복리후생비 산정

(단위:원,km)

구분	대당1일 인건비	대당1일 법정복리후생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급여	81,352	8,574	281.11	30.50

(*) 소득을 노출하지 않은 비공식수입과 부가세경감분은 법정복리후생비에 반영하지 아니함.

○ 5대 보험 요율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2> 법정복리후생비 요율산정 (2013년기준)

(단위:%)

구분	적용요율	비고
국민연금	4.50%	
건강보험	2.95%	
장기요양보험	0.19%	건강보험의 6.55%
고용보험	1.00%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산재보험	1.90%	여객자동차운수업기준
합계	10.54%	

(4) 운전직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

운전직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는 피복비, 경조사비, 휴가비, 무사고격려금, 교통비지원, 장갑비, 기숙사 및 휴게실 운영비 등 경영실태조사표의 지급실적을 연간운행대수 및 운행일수로 나누어 대당 1일 기타복리후생비를 산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13> 영업거리 km당 운전직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 산정

(단위:원,대,일,km)

연간 총 기타복리후생비	운행대수	운행일수	대당 1일 기타복리후생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13,116,799,139	13,146	365	2,734	281.11	9.72

(5) 연료비

1일 대당 연료비는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LPG 주유대금으로서, 유가보조금을 차감한 연료단가를 적정연비로 나누어 km당 적정연료비를 산출 후 1일 평균주행거리 및 1일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14> 영업거리km당 연료비 산정

(단위:원,km)

연료단가	적정 연비	km당 적정연료비	1일평균 주행거리	대당1일 연료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870.92 (보조금포함시 1,092.28)	6.19	141	439.92	61,865	281.11	220.08

○ 적정연비 산정

차량의 적정연비는 차량 및 주행상태, 계절에 따라 상이하므로 본 용역에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연비를 설정하고, 등록차량대수를 가중평균하여 적정연비를 설정함.

<표 15> 표준연비 산정내역

(단위:대,원)

차량	대수	표준연비
YF소나타	5,350	6.90
기타	12,909	5.90
합계	18,259	6.19

○ 연료비 단가 산정

LPG의 km당 기준소비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경영실대표상 총주유금액 및 총주유량을 업체별로 산정 후 실제 리터당 주유금액을 산출함. 또한 실제 리터당 주유금액에 유가보조금을 고려 후 연료단가를 산정함. 2009년 요금 조정시 적용한 연료단가인 리터당 825.96원에 비해 상승한 2012년의 실적치 단가인 리터당 1,092.28원을 적용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함.

<표 16> 연료비 단가 산정내역

(단위:원,리터)

구분	금액	비고
① 업체당평균주유금액	1,690,074,071	경영실대표상 실적치기준
② 업체당평균주유량	1,547,297	경영실대표상 실적치기준
③ 리터당금액	1,092.28	③=①/②
④ 유가보조금	221.36	
⑤ 연료단가	870.92	⑤=③-④

(6) 타이어비

타이어비는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타이어비용으로서, 타이어단가(실적기준)를 적정 타이어 교체주기(60,000km 주행시)로 나누어 km당 타이어비를 산정한 후 1일 평균주행거리 및 영업 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17> 영업거리 km당 타이어비 산정

(단위:원,km)

타이어 적정단가	적정타이어 교체주기	km당 타이어비	1일평균 주행거리	대당1일 타이어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240,376	60,000	4.01	439.92	1,762	281.11	6.27

○ 타이어 적정단가

타이어 가격의 경우 브랜드, 차종, 구매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 택시 회사 마다 구입단가가 상이함. 회사가 계속해서 동일한 제품 및 구매 방법으로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실적치를 반영하여 적정단가를 구함.

<표 18> 타이어적정단가 산정내역

(단위:원,개)

구분	금액	비고
① 실적기준 총타이어비	4,238,370,446	경영실태조사표상 실적치기준
② 총타이어수량	70,529	경영실태조사표상 실적치기준
③ 개당 타이어 가격	60,094	③=①/②
④ 차량 1대당 적정타이어비용	240,376	④=③x4

○ 적정타이어 교체주기

타이어의 교체주기는 도로안전공단에서 권장하는 거리인 60,000km를 적용하여 적정타이어 교체주기로 산정함.

2) 차량관리비

차량관리비는 정비직인건비, 정비 및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고지비로 구분하며 해당 운송원가를 산정함.

(1) 정비직인원의 인건비

정비직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실태조사표상 1인당 월급여 및 대당적정 소요인원을 파악한 후 대당 1일 적정인건비를 산정한 후 영업거리를 고려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19> 영업거리 km당 정비직인원의 인건비 산정

(단위:원,명,km)

1인당 월 평균급여	대당 적정 소요인원	대당 월간 인건비	대당 1일 평균급여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2,169,782	0.06	119,494	3,929	281.11	13.98

○ 정비직 1인당 월 평균급여 산정

경영실태조사표상 실적치를 기준으로 정비직의 총인건비를 연평균 정비직 인원으로 나누어 정비직 1인당 월 평균급여를 산정함.

<표 20> 정비직 1인당 월 평균급여 산정

(단위:원,명)

구분	금액	비고
① 정비직 총인건비	18,851,061,728	경영실태조사표상 실적치기준
② 정비직 인원	724	연평균인원
③ 정비직 1인당 월 평균급여	2,169,782	③=①/②/12

○ 대당적정 소요인원

정비직인원의 대당적정 인원은 경영실태조사표에 의한 정비직 인원수와 운행대수를 고려하여 대당 적정소요인원을 산정함.

<표 21> 정비직 대당적정인원 산정

(단위:명,대)

① 경영실태조사표에 의한 정비직인원수	724
② 운행대수	13,146
③ 대당적정인원 (①/②)	0.06

(2) 정비직인원의 퇴직급여

정비직인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대당1일 평균급여의 1/12을 산정한 후 1일 영업거리를 고려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22> 영업거리 km당 정비직인원의 퇴직급여 산정

(단위:원,km)

대당 1일 평균급여	퇴직급여	1일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3,929	327	281.11	1.16

(3) 정비직인원의 법정복리후생비

정비직인원의 법정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정비직인원 평균급여의 일정비율(10.54%)를 적용하여 대당1일 금액을 산정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23> 영업거리 km당 정비직인원의 법정복리후생비 산정

(단위:원,km)

대당1일 평균급여	대당1일 법정복리후생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3,929	414	281.11	1.47

(4) 정비직인원의 기타복리후생비

정비직인원의 기타복리후생비는 식대, 피복비, 기타 등으로 구성되며, 경영실태조사표의 지급실적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을 연간운행대수 및 운행일수로 나누어 대당 1일 기타복리후생비를 산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24> 영업거리 km당 정비직인원의 기타복리후생비 산정

(단위:원,대,일,km)

연간 총 기타복리후생비	운행대수	운행일수	대당 1일 기타복리후생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592,359,753	13,146	365	123	281.11	0.44

(5) 정비 및 차량관리비

정비 및 차량관리비는 엔진오일, 기어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기타잡유비, 소모품비, 부속품비, 기타부품비, 차량유지비, 검사점검비, 수리비, 견인비, 세차비, 기타수리비로 구성되며, 경영실태조사표의 지급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연간 정비 및 차량관리비를 연간운행대수 및 운행일수로 나누어 대당 1일 정비 및 차량관리비를 산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25> 영업거리 km당 정비및차량관리비 산정

(단위: 원, 대, 일, km)

연간 총 정비및차량관리비	운영 대수	운영 일수	대당 1일 정비및차량관리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원가
38,543,983,255	13,146	365	8,033	281.11	28.57

(6)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대당 평균취득금액(취득부대비용 포함)을 산정 후 내용연수 5년, 예비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 후, 운영일수를 고려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26> 영업거리km당 감가상각비 산정

(단위: 원, 년, 일, %, km)

대당평균 취득가액	내용 연수	감가상각비 (1년 기준)	운영 일수	예비율	1일 대당 감가상각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원가
13,421,153	5	2,684,231	365	4%	7,660	281.11	27.25

○ 대당 평균취득가액 산정

경영실태조사표상 각 차량별 취득금액(취득부대비용 포함)을 산정 후 차량대수를 고려하여 대당 평균취득금액을 산정함.

<표 27> 차종별 취득금액 및 대당평균취득금액산정

(단위: 대, 원)

차종	차량대수	취득금액	대당 평균취득금액
NF소나타	8,190	103,099,465,095	12,588,457
YF소나타	5,350	79,175,903,073	14,799,234
HG그랜저	10	215,545,895	21,554,590
EF소나타	33	431,430,000	13,073,636
K5	2,157	31,895,218,771	14,786,842
SM5	35	475,200,000	13,577,143
로체	2,346	28,002,462,939	11,936,259
토스카	76	1,030,927,000	13,564,829
기타	113	1,415,159,308	12,523,534
합계	18,310	245,741,312,081	13,421,153

○ 감가상각비의 기준설정

본 연구에서는 감가상각의 요소별 기준설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해당 감가상각비를 산정함.

<표 28> 감가상각비 요소별 기준설정 (단위:년,원)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가액	비고
5년	정액법	-	

- 일반택시 내용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4년이며, 추가적으로 2년 연장 가능함.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치인 5년을 적용함.
- 상각방법은 일반적으로 차량 등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사용하는 정액법으로 하였으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일정하게 비용처리하고 잔존가액은 "0"으로 간주함.

(7)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은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기타공과금으로 구성되며, 경영실태조사표 지급실적을 근거로 실제 해당 납부금액을 산출 후 가동률 및 영업거리를 고려하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29> 영업거리 km당 차량보험료및제세공과금 산정

(단위:원,% ,km)

구분	실적치기준 1일 차량보험료 등	예비율	가동률(*)	대당적정원가 (1일)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차량보험료	15,553	4%	72%	11,665	281.11	41.49
제세공과금	2,034	4%	72%	1,525	281.11	5.43
합계	17,587			13,190		46.92

(*) 미가동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은 실적원가에 산정하지 아니함.

○ 1일 차량보험료 등의 산정내역

<표 30> 영업거리 km당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산정

(단위:원,대,일)

구분	연간총금액	운행대수	운행일수	대당 1일 차량보험료등
차량보험료	74,629,653,164	13,146	365	15,553
제세공과금	9,758,987,699	13,146	365	2,034
합계	84,388,640,863			17,587

(8) 차고지비

차고지비에 대한 원가 산정은 2012년도 차고지 임대료의 추정치를 전체 업체에 반영하여 산정함.

<표 31> 영업거리 km당 차고지비의 산정

(단위:원,km)

구분	추정치기준 1일대당 차고지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원가
차고지비	4,240	281.11	15.08

○ 차고지비 산정 : 차량 1대당 소요면적을 토대로 면적(m²)당 사용료를 추정하여 대당 1일 차고지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 대당 1일 차고지비의 산정

(단위:m², 원)

구분	금액 및 면적	비고
① 대당 소요면적	25m ²	대당 최소 필요면적 : 8~15m ²
② 면적(m ²)당 1일 사용료	169.6	*주1)참조
③ 대당 1일 사용료	4,240	대당소요면적 * 대당 1일 임대료

*주1) 현재 분양중인 마곡동 택시 차고지의 면적(m²)당 1일 사용료산정내역

<표 33> 면적당 사용료의 산정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면적(m ²)당 공시지가	1,238,154	(공시지가)
사용요율(연)	5%	(국유재산법상 사용요율)
면적(m ²)당 사용료(연)	61,908	면적당공시지가 * 사용요율
면적(m ²)당 1일 사용료	169.6	면적당 사용료/365일

3) 일반관리비

(1) 임직원등 인건비

임직원등에 대한 인건비는 경영실태조사표상 1인당 월 급여 및 해당 적정 소요인원을 파악한 후 해당 1일 평균인건비를 산정한 후 영업거리를 고려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34> 영업거리 km당 임직원등 평균급여 산정

(단위:원,명,km)

구분	1인당 적정 연간총급여	1인당 평균 월급여	대당적정 인원	대당월간 평균급여	대당1일 평균급여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임원	53,034,500	4,419,542	0.032	141,867	4,664	281.11	16.59
일반직	29,030,076	2,419,173	0.112	270,321	8,887	281.11	31.61
기타	16,690,014	1,390,835	0.003	4,867	160	281.11	0.57
합계				417,054	13,711		48.78

○ 1인당 연간 적정 총급여

임원의 경우 실제 1인당 총급여액은 약 7천만원(2011년 손익계산서참조)이며 본 연구에서 임원의 적정 총급여액은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 기준인 53,034,500원을 적용함. 이외 일반직 및 기타직의 인건비는 경영실태조사표 실적치 기준을 근거로 산정함.

○ 대당적정 인원

경영실태조사표에 따르면 임원은 업체당 평균 2.2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업체당 2명을 적정인원으로 판단하여 산정하였으며, 일반직과 기타직은 경영실태조사표에 의한 실적치를 반영하여 대당 적정인원을 다음과 같이 산출함

<표 35> 대당 적정인원 산정내역

(단위:명,대)

구분	임원(*)	일반직	기타직
① 경영실태표에 의한 인원수	422	1,469	46
② 운행대수	13,146	13,146	13,146
③ 대당 소요인원 (①/②)	0.032	0.112	0.003

(*) 임원의 경우 업체당 2인, 일반직은 업체당 약 7명 기준임.

(2) 임직원등 퇴직급여

임직원등 영업 km당 퇴직급여는 대당 1일 평균급여의 1/12을 산정하고,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36> 영업거리 km당 임직원등 퇴직급여 산정

(단위:원,km)

대당 1일 평균급여	퇴직급여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km당 원가
13,711	1,143	281.11	4.06

(3) 임직원등의 법정복리후생비

임직원등에 대한 법정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구성되며, 대당1일 평균급여의 일정비율(10.54%)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37> 영업거리 km당 임직원등의 법정복리후생비 산정

(단위:원,km)

대당 1일 평균급여	대당1일 법정복리후생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13,711	1,445	281.11	5.14

(4) 임직원 및 기타직에 대한 기타복리후생비

임직원 및 기타직의 기타복리후생비는 식대, 피복비, 장학금, 야유회비, 경조사비, 휴가비, 무사고격려금, 교통비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경영실태조사 표상 지급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연간 기타복리후생비를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일수로 나누어 대당 1일 기타복리후생비를 산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38> 영업거리 km당 임직원등 기타복리후생비 산정

(단위:원,대,일,km)

연간 총 기타복리후생비	운행대수	운행일수	대당 1일 기타복리후생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2,096,398,706	13,146	365	437	281.11	1.55

(5) 경비

경비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포함하는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교통통신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로 구성되며, 경영실태조사표상 지급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연간경비를 연간운행대수 및 운행일수로 나누어 해당 1일 경비를 산출 후 영업거리를 감안하여 영업거리 km당 원가를 산정함.

<표 39> 영업거리 km당 경비 산정

(단위: 원, 대, 일, km)

연간 총 경비	운행대수	운행일수	대당 1일 경비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28,162,301,343	13,146	365	5,869	281.11	20.88

○ 경영실태조사표의 경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0> 경비의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연간총금액	대당 1일 금액	영업거리 km당 원가
지급수수료(*)	17,700,852,559	3,689	13.12
수도광열비	3,081,616,140	642	2.28
사무용품비	397,400,776	83	0.29
도서인쇄비	320,438,916	67	0.24
소모품비	1,966,708,619	410	1.46
교통.통신비	4,090,533,697	852	3.03
광고선전비	88,638,529	18	0.07
교육훈련비	516,112,107	108	0.38
합계	28,162,301,343	5,869	20.88

(*) 지급수수료에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참고로 카드결제 수수료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1> 카드결제 수수료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결제금액	수수료(**)	소액지원수수료
전체 법인택시	721,215	14,185	3,240
조사대상 법인택시	611,885	12,035	2,749

(**)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2012.6월까지는 2.1%, 2012.7월부터는 1.9%임

4) 이윤

(1) 적정이윤

적정이윤에 대한 실적원가산정은 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표 42> 영업거리 km당 적정이윤의 산정

(단위:원,일,km)

연간 대당 적정이윤	운영일수	1일 대당 적정이윤	1일 영업거리	영업거리 km당 원가
2,490,000	365	6,822	281.11	24.27

- 적정이윤 산출방식은 기존에 적용하였던 자산기준 보수율의 적용방식, 자본에 대한 이윤율의 적용방식 또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이익률 적용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43> 이윤산정방식의 비교

구분	자산기준	자본기준	수입금/ 운송원가 기준
적용 방법	- 특정자산에 일정보수율 적용 - 투자자산에 대한 보수성격	- 회사의 자기자본 또는 자본에 일정율의 투자보수율 적용 -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의보수	- 운송 수입금 등 매출액 또는 운송원가의 특정비용에 대한 일정한 이익률 적용 - 영업에 대한 이익의 개념
장점	- 투자자산에 대한 이윤보장으로 투자 촉진 - 현행 적용 방식	- 자기자본에 대한 이윤보장으로 운수업체 재무구조개선에 기여	- 업체의 운송수입금 증대 노력촉진 또는 특정 비용에 대한 지출보장
문제점	-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 지비의 지급 및 차량감가 상각비등의 운송원가 반영 등에 따른 이중 보상 문제 - 투자 보수율의 산정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미흡	- 업체들의 낮은 자본금규모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율을 적용	- 이윤 규모가 사후적으로 확정됨 - 특정 비용의 과다 지출 유발 가능성이 있음.

- 상기 검토 결과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운송원가에서의 이윤의 정의를 사업을 위한 투자에 대한 보수 또는 투하자본에 대한 보수등의 형태로 보아서 자산기준으로 설정함.
- 따라서 자산기준을 대상으로 적정이윤을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투자보수율 및 대상자산을 산정함.
 - 투자보수율은 가중평균자본이익률 (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함.

$$WACC = aK_e + bK_d(1-t)$$

a : 자기자본비율	20.20%	b : 부채비율	79.80%
Ke : 자기자본비용	2.66% (3년만기국채수익율)+3%(리스크프리미엄)=5.66%		
Kd : 타인자본비용	4.83%	t : 법인세비용	22%
wacc :	4.15%		

- *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1년) 중 육상여객운송업 기준 적용
- ** 자기자본비용 : 최근 3개월간(2013년 03월부터 05월까지) 3년만기 국채의 평균수익율 및 3%의 리스크프리미엄 적용함.
- *** 타인자본비용 : 최근 각 시중은행별 보증서 및 물적담보대출의 평균대출 금리를 적용함.

- 차량가격은 평균취득가액을 기준으로 2.5년을 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6,710,577원을 설정함. 추정유형자산은 차량이외의 유형자산으로서, 육상여객운송업(한국은행-2011년)상 차량운반구가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50%)을 감안하여 차량가격을 산정함. 추정 무형자산은 현재 법인택시의 실거래가격이 해당 평균 약 6,00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택시의 실거래가격에서 차량가격 및 추정유형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추정함.

<표 45> 해당 유·무형자산의 추정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차량가격	6,710,577	차량대당 평균취득가액(13,421,153원)의 50%
추정 유형자산	6,710,577	육상여객운송업기준 비율적용
추정 무형자산	46,578,846	차량의 실거래가-차량가격-추정유형자산
추정 유·무형자산	60,000,000	차량가격+추정유형자산+추정무형자산

- 상기자료를 토대로 연간 1대당 적정이윤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6> 1일 대당 적정이윤 산정내역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대상자산	60,000,000	추정 유·무형자산
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	4.15%	가중평균자본이익율
연간추정적정이윤	2,490,000	대상자산*가중평균자기자본비용

4.4 실적원가요약

○ 각 항목별로 산정한 해당 및 영업거리 km당 실적원가는 다음과 같음.

<표 47> 실적원가 요약

(단위:원)

항 목				실적대당원가	영업거리 km당원가	구성비율
운 행 비	운 행 거 리 당 표 준	운 전 직 인 건 비	급여	147,777	525.69	49.78%
			퇴직급여	6,779	24.12	2.28%
			법정복리 후생비	8,574	30.50	2.89%
			기타복리후생비	2,734	9.72	0.92%
		연료비	61,865	220.08	20.84%	
		타이어비	1,762	6.27	0.59%	
차 량 관 리 비	차 량 대 당 표 준	정 비 직 인 건 비	급여	3,929	13.98	1.32%
			퇴직급여	327	1.16	0.11%
			법정복리 후생비	414	1.47	0.14%
			기타복리후생비	123	0.44	0.04%
		정비 및 차량관리비	8,033	28.57	2.71%	
		감가상각비	7,660	27.25	2.58%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13,190	46.92	4.44%	
		차고지비	4,240	15.08	1.43%	
일 반 관 리 비	업 체	임 직 원 인 건 비	급여	13,711	48.78	4.62%
			퇴직급여	1,143	4.06	0.38%
			법정복리 후생비	1,445	5.14	0.49%
			기타복리후생비	437	1.55	0.15%
		경비	5,869	20.88	1.98%	
이윤	업체	적정이윤	6,822	24.27	2.30%	
합계				296,836	1,055.95	100.00%

○ 원가 항목의 구성비를 중심으로 개별항목에서 살펴보면, 운행과 직접 관련된 운행비가 77.31%를 차지했고, 차량비는 12.77%, 일반관리비는 7.62%, 적정이윤은 2.30%임. 세부항목 중 택시운행과 관련된 운전직인건비와 연료비가 각각 55.88%, 20.84%를 차지하고 있음.

5. 기준원가 산정

5.1 기본변수의 설정

- 기준원가는 2012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실적원가 중 실적치 기준으로 산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율(2012년도 물가상승율의 1/2을 적용함)을 적용하여 2013년도 06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 2013. 8. 22. 타결된 임금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원가 항목을 반영하였음
- 항목별 기준원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동률, 영업거리, 영업율, 물가상승률 등 기본변수는 실적원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본변수를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8> 기준원가 산정시 기본변수

(단위:%,km)

물가상승률	가동률	1일 대당 평균운행거리		
		주행거리	영업거리	영업율
2.2%	72.0%	439.92km	281.11 km	63.90%

5.2 원가항목별 기준원가 기본가정

- 물가상승율의 적용
 - 기준원가는 2012년도 물가상승율(2.2%)의 1/2인 1.1%을 반영(기타복리후생비, 타이어비, 정비 및 차량관리비 등)하여 2013년 06월 30일자로 기준원가를 산정함.
- 연료비 보정단가
 - 2012년 경영실태조사를 반영한 실적 평균단가인 1,092.28원과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시스템(ITAS)에서 파악한 서울지역 LPG 충전소 평균공급단가인 1,118.55원을 평균하여 보정함.

$$\begin{aligned}
 * \text{보정단가} &= (2012\text{년 업체실적단가} + 2013\text{년 서울지역평균 충전소 공급단가})/2 \\
 &= (1,092.28 + 1,118.55)/2 \\
 &= 1,105.4\text{원/}\ell \text{ (유가보조금 적용시 } 884.06\text{원/}\ell \text{)}
 \end{aligned}$$

※ LPG 단가 변화추이

- 2009.6월 요금결정시 적용단가 : 825.96원/ℓ (2005.6~2008.10월 평균치)
- 연료비 상승율 : 766.87원('09.6.1.) → 1,122.30원('12.12.31.) : 46.3% 상승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

- 2013. 8. 22. 타결된 임금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하였음
- 운수종사자 월정액급여의 증가분 229,756원/월·인, 5대보험 등 간접비용의 증가분 48,329원/월·인을 포함하여 총 278,083원/월·인을 인상하기로 협약하여, 이를 운송비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운송원가가 증가함.
- 이는 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증가분 배분비율로 노사가 대립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고자 임단협을 먼저 체결하여 배분비율을 정하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을 1일 대당으로 반영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49>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

(단위: 원/대/일)

구분		대당1일 금액
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용	월정액 급여	17,674
	5대보험 등 간접비용	3,717
합계		21,391

○ 택시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소요 비용

- 택시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이행담보방안으로 2013. 8. 1. 의무화된 택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비용을 운송원가에 반영함.
-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은 운수종사자 1인당 연간 단가 20,000원의 운전복을 2벌 추가 지급하는 것을 비용에 반영하였음.
- 영상장비 장착비용은 단가 200,000원 상당의 택시내부촬영용 영상장비 장착에 필요한 비용에 반영함.
-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기존에 상반기 6,000원, 하반기 7,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택시업체가 부담해야할 수수료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운송수입금 증가와 카드결제율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액 6,516백만원을 원가에 반영함.
- 택시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1일 대당으로 반영한 원가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0>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원비용

(단위: 원/대/일)

구분		대당1일 금액
택시서비스 개선비용	운수종사자 복장지원비용	267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556
	카드결제수수료 비용	794
합계		1,617

5.3 실적원가와 기준원가와 비교

○ 실적원가와 기준원가의 증감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51> 실적원가와 기준원가의 비교

(단위: 원)

항 목			실적원가	기준원가	증감	
운 행 비	운행 거리 당 표준	급여(*)	147,777	165,603	17,826	
			147,777	165,603	17,826	
		운전직	퇴직급여(*)	6,779	8,265	1,486
			6,779	8,265	1,486	
		인건비	법정복리 후생비(*)	8,574	10,654	2,080
			8,574	10,654	2,080	
		기타복리후생비	2,734	3,031	297	
2,734	3,031	297				
연료비	61,865	62,798	933			
타이어비	1,762	1,782	20			
차 량 관 리 비	차량 대당 표준	급여	3,929	3,972	43	
			3,929	3,972	43	
		정비직	퇴직급여	327	331	4
			327	331	4	
		인건비	법정복리 후생비	414	419	5
			414	419	5	
		기타복리후생비	123	125	2	
		123	125	2		
		정비 및 차량관리비	8,033	8,677	644	
감가상각비	7,660	7,660	-			
차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13,190	13,335	145			
차고지비	4,240	4,287	47			
일 반 관 리 비	업체	급여	13,711	13,862	151	
			13,711	13,862	151	
		임직원	퇴직급여	1,143	1,155	12
			1,143	1,155	12	
		인건비	법정복리 후생비	1,445	1,461	16
			1,445	1,461	16	
기타복리후생비	437	442	5			
437	442	5				
경비	5,869	6,728	859			
이윤	업체	적정이윤	6,822	6,822	-	
합계			296,836	321,408	24,574	

(*) 비공식수입은 급여에는 반영하였지만, 퇴직급여 및 법정복리후생비에는 반영하지 않음.

6. 운송수지분석

6.1 운송수입산정

-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DTG자료 및 타코미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대상은 2인1차 기준으로 1일 운송수입금이 287,364원(10시간 기준, 시간당 14,500원, 부가가치세분 제외))을 기준으로 분석함.
 -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은 임단협에서 규정한 배차시간인 10시간을 일평균 근로시간으로 하였음.
- 운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세특례법”제106조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상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에서 상기비율만큼 차감하고 경영수지를 분석함.
 - 운송수입금의 110분의 1이 부가가치세이므로 운송수입금 중 109/110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운송수입금을 반영함.

6.2 정책대안별 운송수입금 변화

- 시계 외 할증제도 부활시 운송수입금 증가율은 1.2%이며, 1일 운송수입금이 1일 평균 3,450원 증가하여 1회 탑승당 약 69원의 요금인상 효과와 동일함.
- 심야요금시간대를 기존 24시~익일 04시에서 23시~3시로 변경시 운송수입금 증가율은 1.1%이며, 운송수입금이 1일 평균 3,200원 증가하여 1회 탑승당 약 64원의 요금인상 효과와 동일함.

<표 52> 정책대안별 운송수입금 변화

(단위 : 원/대/일)

구 분	운송수입증가	요금인하요인
시계외 할증 부활	3,450	- 69
심야요금 시간대 조정	3,200	- 64

6.3 운송수지분석

- 운송수입 대비 기준원가의 해당 운송수지를 살펴보면 해당운송 수입이 287,364원, 운송원가는 321,407원으로 1대당 1일 34,043원으로 11.8%의 운송수지 적자율이 발생하고 하고 있음.

<표 53> 기준원가의 운송수지

(단위: 원/대일, %)

구분	금액	영업km당 수지
대당운송 수입(*)	287,364	1,022.25
대당운송 기준원가	321,407	1,143.36
대당운송수지	(-)34,043	(-)121.11
운송수지율	(-)11.8%	(-)11.8%

- 운송수지 부분은 운송원가 적자 발생분 보전, 임단협 이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반 비용의 원가반영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4> 정책대안별 운송원가 변화

(단위 : 원/대/일)

구분	운송원가증가	요금효과
운송원가 적자 발생액 보전	11,035	+ 221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비용	21,391	+ 428
택시서비스 개선 비용	1,617	+ 32

6.4 적정운임산정

- 기본안 : 시계외요금 부활 + 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 예상 운송수입금 : 290,814원/대/일
 - 기준원가 : 321,407원/대/일
 - ▶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30,593원/대/일 부족
 - 요금 인상액 : 기본요금 600원 인상

- 대안 1 : 시계외요금 부활 + 심야요금 시간 조정(23~03시)
 - 예상 운송수입금 : 294,014원/대/일
 - 기준원가 : 321,407원/대/일
 - ▶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27,393원/대/일 부족
 - 요금 인상액 : 기본요금 500원 인상
 - ▶ <기본안> 대비 기본요금 인상수준 100원 추가 인하 가능

- 대안 2 : 시계외요금 미부활 + 심야요금 시간 현행 유지
 - 예상 운송수입금 : 287,364원/대/일
 - 기준원가 : 321,407원/대/일
 - ▶ 기준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34,043원/대/일 부족
 - 요금 인상액 : 기본요금 700원 인상

<표 55> 대안별 적정운임 산정

구 분	기 본 안	대 안 1	대 안 2
기본요금 (인상액)	3,000원 (600원 ↑)	2,900원 (500원 ↑)	3,100원 (700원 ↑)
인 상 율	10.5% (612원 인상 필요)	9.3% (548원 인상 필요)	11.8% (681원 인상 필요)

- 결론적으로 해당 운송수지를 맞추어 기본요금은 2,900원, 3,000원, 3,100원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함